

1. 개정이유

국민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(또는 세무대리인)의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접수증 항목을 추가함(안 별지 제40호의2~5서식)
- 나.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접수증 항목을 추가함(안 별지 제40호의6서식)
- 다. 국세(종합소득세)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개정함(안 별지 제40호의3·5서식)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- 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, 신청,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관리번호	-	(년 귀속)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거주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85%;">거주자1 / 비거주자2</td> </tr> <tr> <td>내·외국인</td> <td>내국인1 / 외국인9</td> </tr> <tr> <td>외국인단일세율적용</td> <td>여 1 / 부 2</td> </tr> <tr> <td>분리과세</td> <td>여 1 / 부 2</td> </tr> <tr> <td>거주지국</td> <td>거주지국코드</td> </tr> </table>	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	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	외국인단일세율적용	여 1 / 부 2	분리과세	여 1 / 부 2	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
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												
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												
외국인단일세율적용	여 1 / 부 2												
분리과세	여 1 / 부 2												
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												

① 기본사항

① 성 명						② 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	-						
③ 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납 세 지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주소지 전화번호												⑥ 사업장 전화번호													
⑦ 휴 대 전 화												⑧ 전자우편주소													
⑨ 기 장 의 무		①복식부기의무자										②간편장부대상자										③비사업자			
⑩ 신 고 유 형		⑪자기조정		⑫외부조정		⑬성실신고확인		⑭간편장부		⑮추계-기준을		⑯추계-단순을													
		⑰분리과세		⑱비사업자																					
⑪ 신 고 구 분		⑲정기신고				⑳수정신고				㉑경정청구				㉒기한후신고				㉓추가신고(인정상여)							

② 환급금 계좌신고		⑫ 금융기관명					⑬ 계좌번호				
③ 세무대리인	⑭ 성명	⑮ 사업자등록번호				-		-			⑯ 전화번호

④ 세액의 계산				개인지방소득세	
구		분			
과	세	표	준	⑰	
세			율	⑱	
산	출	세	액	⑲	
세	액	감	면	⑳	
세	액	공	제	㉑	
결 정 세 액	총 합 과 세 (⑲-⑳-㉑)			㉒	
	분리과세			㉓	
	합 계 (㉒+㉓)			㉔	
가 산 세	무(과소)신고			㉕	
	납 부 지 연			㉖	
	기 타			㉗	
	계 (㉕+㉖+㉗)			㉘	
추	가	납	부	세	액
합	계 (㉔+㉘+㉙)			㉙	
기	납	부	세	액	㉚
납	부	할	총	세	액 (㉚-㉛)
분	납	할	세	액	㉛
신고기한	이내	납부할	세액 (㉚-㉛)	㉜	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접 수 증(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)				
신고인 (대리인)		주 소		접 수 일
첨부서류	1. 재무상태표 1부		5. 소득공제신고서 1부	접수번호
	2.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		6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·감면신청서 1부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	3. 합계잔액시산표 1부		7.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	
	4. 조정계산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6호서식) 1부		8. 그 밖의 첨부서류 1부	

- 3 -

작성방법

1.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.
2. ② 주민등록번호란: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3. ④ 납세지란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「소득세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(이하 “주소지등”이라 함)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 ※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) 일반적인 경우: 12월 31일의 주소지등
 2) 사망한 경우: 사망일의 주소지등
 3) 국외이전(출국)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: 출국일의 주소지등
4. ⑩ 신고유형란: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☒ 표시 합니다.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⑭, ⑫, ⑪, ⑳, ㉑, ㉒, ㉓, ㉔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.
5.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6. ③ 세무대리인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7. ⑰ 과세표준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㉑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. 8. ⑱ 세율란·⑲ 산출세액란: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 ※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,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,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9. ㉒ 세액감면란·㉑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㉔·㉕ 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적습니다.
10. ㉓ 분리과세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㉖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.
11. 가산세란: ㉗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㉘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㉙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12. ㉚ 추가납부세액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㉙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.
13. ㉛ 기납부세액란: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, 수시부과세액,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(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)을 적습니다.
14. ㉜ 납부할 총세액란: ㉛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 그 금액이 “0” 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,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15. ㉝ 분납할 세액란: ㉜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,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

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과세표준 귀속년도	2018년~2020년		과세표준 귀속년도	2021년~2022년		과세표준 귀속년도	2023년부터	
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④ 전자우편주소	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		
⑥ 주소지 전화번호		⑦ 주사업장 전화번호		⑧ 휴대전화번호
⑨ 신고유형	32 추계 - 단순율 40 비사업자	⑩ 기장의무	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	⑪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, ⑫ 수정신고, ⑬ 기한후신고
② 환급금 계좌신고		⑫ 금융기관명	⑬ 계좌번호	

구 분	금 액
⑭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㉓ 과세표준란의 금액	

※ 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귀속년도	2018년~2020년		귀속년도	2021년~2022년		귀속년도	2023년부터	
	과세 표준	세율		과세표준	세율		과세 표준	세율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

①⑨ 결정세액: ①⑥ - (①⑦+①⑧)

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.

무(과소)신고	
납 부 지 연	
기	타
합	계

②① 총 결정세액: ①⑨+②①(합계란 금액)

㉔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㉔(중간에납세액을 제외한 금액) × 10%

②③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②①-②②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개 일 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접 수 증 (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)			
신고인 (대리인)	주 소		접 수 일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		접수번호
		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다.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210mm × 297mm (백상지 80g/m²)
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
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(분리과세 소득자용)

관리번호 -

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
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
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④ 전자우편주소	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없습니다.			
⑥ 주소지 전화번호		⑦ 휴대전화번호		
⑧ 신고유형	35 분리과세	⑨ 신고구분	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 기한후신고	
② 환급금 계좌신고		10 금융기관명	11 계좌번호	
③ 세무대리인	12 성명	13 사업자등록번호	14 전화번호	

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구	분	합	계	33 주택임대 사업소득	69 기타소득 (계좌입금·배당금· 대체되는 경우)	66 연금소득
15	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18 과세표준란의 금액					
16	세율: 「지방세법」 제93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			1.4%	2.0%	1.5%
17	산출세액: (과세표준15 × 세율16)					
18	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21 ×10%					
19	결정세액: 17-18					
20	가산세액:	무(과소)신고				
	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	납 부 지 연				
		기 타				
		합 계				
21	추가납부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24×10%					
22	합계: 19+20(합계란 금액)+21					
23	기납부세액					
24	납부(환급)할 세액: 22-23					

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

25 종합소득금액(분리과세 소득 제외)	[] 2천만원 초과	[] 2천만원 이하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접 수 중(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)					
신고인 (대리인)	주 소			접 수 일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				접수번호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
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(단일소득-종교인소득자용)

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		
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		
거주지국		거주지국코드	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④ 전자우편주소	
⑤ 납세지	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	
⑥ 주소지 전화번호			⑦ 휴대전화번호	
⑧ 신고구분		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 기한후신고		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⑨ 금융기관명		10 계좌번호	

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구

분

금

액

⑪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④ 과세표준란의 금액

⑫ 세 율: 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

※ 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과세표준	2018년~2020년		과세표준	2021년~2022년		과세표준	2023년부터	
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

⑬ 산출세액: [과세표준(⑪)×세율(⑫)－누진공제액(⑫하단 세율표 참고)]

⑭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⑤0×10%

⑮ 결정세액: ⑬－⑭

무(과소)신고
납 부 지 연
합 계

⑪ 총결정세액: ⑩ + ⑪(합계란 금액)

⑬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5)의 66×10%

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⑬-⑭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접 수 증(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)			
신고인 (대리인)		주 소	접 수 일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		접수번호
		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)

관리번호 -

(년 귀속)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① 기본사항

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	-
③ 주 소		
④ 납세지		
⑤ 신고구분	⑩ 정기신고 ②② 수정신고 ③③ 경정청구 ④④ 기한후신고	⑥ 전화번호
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⑦ 은행명	⑧ 계좌번호
------------	-------	--------

③ 세무 대리인	⑨ 성명	⑩ 사업자등록번호	⑪ 전화번호
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	--------

④ 퇴직 소득 명세	⑫ 지급처명	⑭ 입사일	⑯ 지급일	⑮ 퇴직급여	⑯ 비과세 퇴직급여	⑰ 과세대상 퇴직급여
	⑬ 사업자등록번호	⑮ 퇴사일	⑰ 근속월수			
	합 계					

⑤ 근속연수계산	⑮ 제외월수	⑮ 가산월수	⑮ 중복월수	⑮ 정산근속 연수	⑮ 2012.12.31. 이전 근속연수	⑮ 2013.1.1.이후 근속연수(⑮-⑮)
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⑥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
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계 산 내 용		금 액
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		㉓
	환산산출세액(㉓× 세율)		㉔
	산출세액(㉔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㉕
	세액공제		㉖
	가산세	무(과소)신고	㉗
		납부(환급)지연	㉘
		합계(㉗+㉘)	㉙
	기납부 세액		㉚
납부할 총세액(㉕-㉖+㉙-㉚)		㉛	
분납할 세액		㉜	
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㉛-㉜)		㉝	

⑦ 2016~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

(※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)
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계 산 내 용		금 액		
			⑮		
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		⑮		
	환산산출세액(⑮× 세율)		⑮		
	산출세액(⑮× 정산근속연수/12)		⑮		
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		⑮		
	계 산 내 용			2012.12.31. 이전	2013.1.1. 이후
	과세표준안분(⑮× 각근속연수/정산근속연수)		⑮		
	연평균과세표준(⑮/각근속연수)		⑮		
	환산과세표준(⑮× 5)		⑮		
	환산산출세액(⑮× 세율)		⑮		
	연평균산출세액(2012.12.31.이전: ⑮× 세율, 2013.1.1.이후: ⑮/5)		⑮		
	산출세액(⑮× 각 근속연수)		⑮		

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	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㉟	
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(㉞× 퇴직연도별 비율) + [㉟× (100%-퇴직연도별 비율)]		㉟	
	세액공제		㉟	
	가산세	무(과소)신고	㉟	
		납부(환급)지연	㉟	
		합계(㉟+㉟)	㉟	
	기납부 세액		㉟	
납부할 총세액(㉟-㉟+㉟-㉟)			㉟	
분납할 세액			㉟	
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㉟-㉟)			㉟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접 수 증(년 귀속 퇴직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)				
신고인 (대리인)		주 소		접 수 일
첨부서류	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서 부표(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) 1부			접수번호
			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1.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.
2. ④ 납세지란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「소득세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(이하 “주 소지등”이라 함)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 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 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3. ② 환급금 계좌신고(⑦·⑧)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4. ③ 세무대리인(⑨~⑪)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5. ④ 퇴직소득명세(⑫~⑳)란: ⑬ 퇴직급여란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 환급을 포함합니다.
6. ⑤ 근속연수계산(㉑~㉓)란: [근속연수 = (총근속월수 - 중복월수)/12]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. 다만, 1월 미만의 일수는 1 월로 하고,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.
7. ⑦ 2016~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㉗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의2서식 ㉓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의2서식 ㉙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 - 다. ㉚ 환산산출세액란: ㉗ 퇴직소득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 - 라. ㉛ 과세표준안분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. 12. 31.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. 1. 1.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.
 - 마. ㉜ 환산과세표준란과 ㉝ 환산산출세액란: 2013. 1. 1.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.
 - 바. ㉞ 연평균산출세액란: 2012. 12. 31. 이전 부분은 ㉚ 연평균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, 2013. 1. 1. 이후 부분은 ㉝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 - 사. ㉟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: (㉚ × 퇴직연도별 비율) + [㉜ × (100% - 퇴직연도별 비율)]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, ㉟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.

구분 \ 퇴직연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퇴직연도별 비율	20%	40%	60%	80%

- 아. ㊱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」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 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「소득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자. 가산세란: ㉟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㉟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 - 차. ㉫ 기납부 세액란: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.
 - 카. ㉬ 분납할 세액란: ㉟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,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
8.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,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
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귀속년도	2018년~2020년		귀속년도	2021년~2022년		귀속년도	2023년부터	
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
과세표준			과세표준			과세표준		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